

工業所有權審判事例

商標 登錄無効

〈大法院 第3部 判決〉(1987. 2. 24)

事件番號 : 86 후 21

裁判長 : 김 형 기

關與法官 : 윤 판 · 이 명 희

1. 審判請求人(上告人) : 아풀리까시옹 데 가이즈(주) (대표 : 알베르 휘셔)
2. 被審判請求人(被上告人) : 김규환(부산시 동래구 부곡동 293-3)
3. 原審決 : 特許廳 1985. 12. 30字, 1984年 抗告審判(當) 第31號 審決
4. 主文 : 上告를 棄却한다. 上告費用은 審判請求人の 負擔으로 한다.
5. 理由

上告理由를 判斷한다.

著名・周知의 商標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商標의 사용・공급・영업활동의 期間・方法・태양 및 거래범위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. (당원 1986. 10. 14. 선고 83 후 77판결, 1986. 1. 21 선고 85 후 92 판결 참조)

그리고 引用商標가 세계 여러나라에 登錄되어 있고 그 商標 및 指定商品이 어느정도 선전되어 있다하여 반드시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들간에도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. (당원 1982. 9. 14 선고, 80 후 113참조)

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引用商標가 세계 90여 개국에 登錄되어 선전판매되고 또 우리나라에도

그 판시와 같은 정도의 선전이 되어있다거나 特許廳에서 발행한 “프랑스商品目錄”에 引用商標의 指定商品이 실려있다 하여 바로 引用商標를 周知・著名商標라고 볼 수 없다고 判示한 다음 나아가 登錄商標와 引用商標를 각 그 指定商品을 달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각 그 指定商品間に 주 에너지원이 달라 그 취급・관리・제품의 판매처도 같을 수 없다하여 類似한 商品이 아니라고 判示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같은 법리오해, 이유불비 또는 체중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. 主張은 모두 理由 없다.

그러므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費用은 審判請求人の 負擔으로 하여 關與法官의 일치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. <※>

零細發明家를 돋습니다

大韓辨理士會에서는 극빈자가 發明・考案을 하여 이를 出願하고자 할 때 당회소속 辨理士가 무보수로 受任하여 모든 節次를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.

극빈자 發明家 여러분께서는 大韓辨理士會를 많이 利用하시기 바랍니다.

구비서류 : ① 邑・面・洞長이 發行하는 영세생활보호대상자 증명 2통

② 發明 考案의 要旨說明書 2통(도면 포함)

※ 자세한 사항은 大韓辨理士會(552-0882~5)로 問議바랍니다